

—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경기침체와 유통산업의 개방, 쇼핑문화의 변화 등으로 상권이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어
- 재래시장을 소비자가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하여 재래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함

3. 주요내용

[취득재산]

- 토 지 : 3필지 566 m^2
- 건 물 : 2동 376.78 m^2 (지하 1층, 지상 2층)
- ※ 보상후 멸실조치
- 예정가격 : 315,893천원(공시지가 및 과세시가 표준액 기준)

[처분재산]

- 건 물 : 2필지 376.78 m^2 (지하1층, 지상2층)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5조
- 지방재정법 제77조, 같은법 시행령 제84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

5. 검토의견

-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시유지를 취득, 처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임.
- 따라서, 토지 3필지와 건물 2동을 매입하고, 건물 2동은 보상후 처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